



문서번호	KSC-규정-01-17	<b>대학발전기금관리규정</b>	총장	이사장
제정일자	2013. 9. 1			
개정일자	2013. 9. 1			
면 수	3			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김천과학대학교(이하 '본 대학'이라 한다)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본 규정에서 기금이란 본 대학에 무상으로 출연된 현금, 부동산, 유가증권이나 연구·업무용 물품, 수목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각종 기부금품을 말한다.

**제3조(기금종류)**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일반기금: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출연한 기금
2. 지정기금: 기부자가 용도를 특별히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

**제4조(심의기구)** 발전기금의 모금·관리·운용 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「대학발전기금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」를 둔다.

## 제2장 위원회

**제5조(구성)**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 및 위원을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

② 위원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③ 위원회 산하에 특별사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6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지정기금과 지정기금의 이자를 지정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와 기금의 사용용도가 장학금인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기금모금계획의 수립과 홍보
2. 기금의 관리·운용
3.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사항
4. 그 밖의 필요한 사항

## 제3장 발전기금의 사용 및 관리

문서번호	KSC-규정-01-17	<b>대학발전기금관리규정</b>	총장	이사장
제정일자	2013. 9. 1			
개정일자	2013. 9. 1			
면 수	3			

**제7조(기금의기부)** ① 기부자로부터 기금을 기부받는 경우는 별지서식 제1-81호의 대학발전기금 기부(약정)서를 통하여 기부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위의 제①항에 따라 기금이 기부된 경우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해당 대학발전기금 기부(약정)서를 함께 관리한다.

**제8조(기금의관리)** ① 기금은 전액 대학에 위탁관리 하도록 한다.

② 조성된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담당부서는 본 대학 회계과로 한다.

③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회계 계정으로 관리·운영하고 결산보고 한다.

**제9조(기금의사용)** ① 기금은 교육용 시설·기자재의 확충, 학생 장학금, 우수교원 초빙, 우수학생 유치, 교육과정 개발, 교원의 연구비 또는 대학발전 성과수당, 그 밖의 교육여건 개선 등 대학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지정기금이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기부자가 특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③ 기금이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의 사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10조(영수증발급및사용보고)** ① 기부자가 기금 기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.


② 기부자가 본인이 기부한 기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요구하는 경우 그 내역을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위의 제②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내역 보고서 본 규정 제9조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와 범위에서 집행한 경우 기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
## 제4장 기부자 예우

**제11조(기부자예우)**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의 범위와 같다.

1. 기념품과 학교홍보물의 제공
2. 감사장이나 감사패 수여
3. 주요행사의 초청과 학교시설 이용혜택의 제공
4. 기부한 시설물이나 기자재에 기부자의 이름이나 아호 등 기재
5. 학보, 소식지, 연하장 등 간행물의 정기적 발송
6. 양산가족 또는 김천과학대학교 명예가족 인정
7. 그 밖에 위원회 심의 등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우

문서번호	KSC-규정-01-17	대학발전기금관리규정	총장	이사장
제정일자	2013. 9. 1			
개정일자	2013. 9. 1			
면 수	3			

## 보 칙

**제1조(준용)**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본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[관련근거: 기획-기획-13-038].